

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09.8.13>

제 호

#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2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노 * *	노 * * 61. 02.17	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561-1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성현 문의전화 : 930-4303)

2012년 1월 25일

읍·면·동장 인

210mm × 297mm [일반용지, 60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

